

 <p>거창군 Geochang County</p> <p>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p>	<h1>공 보</h1> <p>제870호 2022. 8. 3.(수)</p>	
---	---	---

선 결	기관의 장

고 시

- 거창군 고시 제 2022-84호 거창군계획시설(시설:주차장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2
- 거창군 고시 제 2022-86호 도로명주소 고시 4

공 고

- 거창군 공고 제2022-28호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
- 거창군 공고 제2022-1114호 거창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1

회 램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계획시설(시설:주차장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북상면 환승형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따른 거창군계획시설(시설:주차장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

2022. 08. 03.

거 창 군 수

1. 사업의 개요

종류	명칭	위치	사업규모(m ²)		최 초 결정일	비 고
			결정면적	금회시행		
주차장 시설	북상면 환승형 공영 차고지	거창군 북상면 갈계리 1488-2 번지	2,673	2,673	경고524호 (‘21.10.14)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거창군수(경제교통과장)
-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3.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 예정일 : 2022. 08월
- 준공 예정일 : 2022. 12. 31.

4.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

5. 관계도서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도시건축과(☎055-940-35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면적(㎡)	소유자
1	북상면 갈계리	1488 -1	답	141	141	거창군
2	"	1488 -2	답	1,263	1,263	거창군
3	"	1488 -14	답	27	27	거창군
4	"	1488 -18	답	615	615	거창군
5	"	1488 -17	답	51	51	거창군
6	"	1488 -16	답	114	23	경상남도
7	"	1488 -15	답	97	97	거창군
8	"	1484	구	1,743	144	국(농수산부)
9	"	1488 -12	도	239	239	경상남도
10	"	1433 -2	도	165	2	국(건설부)
11	"	1488 -13	도	13	13	경상남도
12	"	1488 -8	도	182	58	경상남도
합 계				4,650	2,673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8. 3.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내학길 254-11 등 12건
- 건물번호 폐지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상동1길 40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램)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체육진흥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8월 3일

거창군수

1. 개정이유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022. 8. 11.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을 의무화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거창군 체육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비 지원 종목 신설(안 제8조의2)

-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 2) 사무소 운영 기본경비
- 3) 사무시설 임차료
-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경비

나. 지원 기준 신설(안 제8조의2)

- 1)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함
- 2)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함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6. 입법예고기간 : 2022. 8. 3. ~ 2022. 8. 23. / 20일간

7. 의견 제출

가. 제출기간 : 2022. 8. 23.(화)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의견제출하는 곳 : 거창군청 체육시설사업소

- 주소 : 경남 거창군 거창읍 심소정길 39-36, (우) 50132
- 전화 : 055)940-8721, FAX: 055)940-8729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안 1부.

3. 관련법령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입법예고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체육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운영비 지원) 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지원하는 운영비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소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경비

②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제1항 중 “「국민체육진흥법」”을 “법”이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u>국민체육진흥법</u>」 제5조에 따른 거창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p>제8조의2(운영비 지원) ① 군수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지원하는 운영비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2. 사무소 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경비 <p>②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p> <p>제9조(협의회)의 구성 ① <u>법</u> 제5조에 따른 거창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p>

관계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①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하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방장애인체육회,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윤리센터, 그 밖의 체육단체와 체육 과학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나 연구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2020. 2. 4., 2020. 12. 8.>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0. 12. 8., 2022. 2. 3.>[전문개정 2016. 2. 3.][시행일: 2022. 8. 11.]

거창군 공고 제2022-1114호

「거창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7월 29일

거창군수

거창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조례·규칙심의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대리로 출석한 사람에게도 의결권을 주어 그 직위로 대표되는 조직이 참석하여 그 조직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당연직 위원 제도의 취지를 살려 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리출석자에게 의결권 부여(안 제12조)

1) (현행) 대리출석자 표결권 없음

(변경) 대리출석자에게 심의·의결권 부여(서면 포함)

3. 개정 규칙안: 붙임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8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기획예산담당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소: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기획예산담당관

다. 우편번호: 51032, 전화/팩스 : 055-940-3073/3029

이메일: sun815@korea.kr

라.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그 밖의 참고사항 등

5. 입법예고문 게재: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붙임]

거창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2022-
----------	-------

제출연월일	2022. . .
제 출 자	기획예산담당관

1. 제안이유

조례·규칙심의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대리 출석한 사람에게도 의결권을 주어 그 직위로 대표되는 조직이 참석하여 그 조직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당연직위원 제도의 취지를 살려 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리출석자에게 의결권 부여(안 제12조)

1) (현행) 대리출석자 표결권 없음

(변경) 대리출석자에게 심의·의결권 부여(서면 포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나) 예고결과: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거창군 규칙 제 호

거창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대리출석)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서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출석자에게도 심의·의결권(서면 심의·의결도 포함한다)이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12조(대리출석) ①</u>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서의 직근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p> <p><u>②</u> 대리 출석한 자는 관계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p>	<p><u>제12조(대리출석)</u>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서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출석자에게도 심의·의결권(서면 심의·의결도 포함한다)이 있다.</p>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2. 1. 13.] [대통령령 제32294호, 2021. 12. 31., 타법개정]

제28조(조례·규칙심의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규칙의 제출·제정·개정·폐지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이 장에서 “조례·규칙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2.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
 4. 예산안·결산 등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 ② 조례·규칙심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부시장(부지사 또는 부시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부지사 또는 부시장으로 한다)·부군수·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은 실장·국장 또는 실장·과장으로 한다.
- ③ 조례·규칙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례·규칙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질의제목 : 여수시 -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 의 당연직 위원이 공석일 경우 직무대리가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2조제1항 등 관련)

관련문서 : 기획예산과 - 12232(2014. 7. 21.)14-0149

1. 질의요지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 의 당연직 위원이 공석일 경우 「여수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직무대리가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지 여부?

2. 의견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 의 당연직 위원인 국·소·단장이 공석일 경우 「여수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직위에 있는 자가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이하 “여수시규칙”이라 한다)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여수시 조례·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2조제1항 본문에서는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국·소·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원이 공석이 될 경우 「여수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직무대리가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심의회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이므로, 그 성격은 심의나 의결이 법적 효력을 가지는 의결기관으로 보기는 어렵고, 다만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등에 신중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심의회에 위원이 대리 참석하는 문제는 법률적 차원에서의 판단보다는 그 제도의 취지 자체를 중심으로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라고 할 것인데, 특히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여수시규칙에는 심의회의 성격, 대리 참석 등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위원회 제도의 일반론을 바탕으로 문제에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조례 및 규칙 등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리 참석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나,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달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당연직 위원은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이 선임을 위한 절차 없이 당연히 위원이 되고 그 직위를 떠나면 당연히 위원에서 해촉되는 위원을 말하는바, 이런 상황에 비추어 보면 실제 그 직위에 있는 사람의 전문성 등의 특성과는 관계없이 그 직위로 대표되는 조직이 갖는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직 위원은 형식적으로는 그 직위에 있는 개인이 참석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직위로 대표되는 조직이 참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당연직 위원 제도가 있는 것은 심의와 의사 결정에 있어서 그 직위

로 대표되는 조직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당연직 위원이 되는 직위에 있는 자의 사고 등으로 궤위된 경우 회의 참석에서 배제된다고 보는 것은 그 직위로 대표되는 조직의 특성이 회의에서 고려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당연직 위원 제도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적어도 당연직 위원 제도를 두는 이상 그 직위에 있는 자의 궤위 시 해당 조례 및 규칙 등에 명시적으로 대리 참석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한 당연직 위원을 대리하는 사람이 당연직 위원의 역할을 한다고 보는 것이 당연직 위원 제도를 두는 취지에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규칙 제2조에 따른 심의회의 구성원을 살펴보면,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와 관련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직 위원은 없고 여수시장의 보조기관·직속기관 등의 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 심의회의는 여수시 조직 내의 의사소통과 협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만약 심의회의의 구성원인 보건소장이 출장 중이고 그 대리자가 참석하지 못하게 되면, 보건소의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부서의 업무에 대하여 보건소의 입장은 전혀 개진되지도 못하여 논의되거나 조정되지도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며, 이는 심의회를 둔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또한, 심의회의의 구성원이 단위 조직의 일부 대표자만으로 제한되어 있다면 달리 생각할 여지도 있을 수 있으나, 여수시규칙과 같이 단위 조직의 대표자가 모두 구성원으로 되어 있다면 대리 참석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제외하고는 대리 참석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심의회의의 당연직 위원인 국·소·단장이 공석일 경우 「여수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직위에 있는 자가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제목 : 경기도 -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 규칙」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하여 의결하려는 경우에, 그 서면의결을 조례규칙심의회 위원인 실장·국장·본부장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할 수 있는지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 규칙」 제8조제2항 관련)
관련문서 : 경기도 법무담당관-5223(2018. 3. 29.) 18-0075

1. 질의요지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 규칙」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하여 의결하려는 경우에, 그 서면의결을 조례규칙심의회 위원인 실장·국장·본부장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할 수 있는지

2. 의견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 규칙」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하여 의결하려는 경우에, 그 서면의결을 조례규칙심의회 위원인 실장·국장·본부장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심의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공포 등을 하려는 경우에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함)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실장·국장 또는 실장·과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심의회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 규칙」(이하 “경기도규칙”이라 함) 제5조에서는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실장·국장·본부장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칙 제7조제2항에서는 의장은 심의할 의안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비상사태·행사 등으로 인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전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 제8조제1항에서는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단서조항으로 제7조제2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경기도규칙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심의회에서 서면심의를 하여 의결을 할 경우로서 실장·국장·본부장이 출장 등으로 직접 서면심의를 하여 의결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 실장·국장·본부장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심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경기도규칙에 따른 심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조례규칙심의회 위원인 실장·국장·본부장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실장·국장·본부장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제5조제1항 본문), 긴급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제7조제2항), 소집하여 하는 심의회 회의에서 위원을 대리하

여 의결할 수 있는 자에게 소집하지 않고 하는 서면심의에서는 그 의결의 대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위원회 운영의 균형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하기 어려우므로 이런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심의회에 대리 참석이 가능한 자는 서면심의의 경우에도 대리의결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심의회가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등에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로서, 심의회에 두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그 직위에 있는 개인이 참석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직위에 대표되는 조직이 참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당연직 위원 제도가 있는 것은 심의와 의사 결정에 있어서 그 직위로 대표되는 조직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법제처 2014. 8. 14. 의견제시 14-0149 참조), 원칙적으로 경기도의 실장·국장·본부장의 직위에 있는 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여 회의에서 소관 부서의 입장을 개진하도록 하려는 것이 당연직 위원 제도의 취지라면 당연직 위원으로 심의회에 참석하도록 한 직위에 있는 자가 소집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대리 참석까지 허용하고 있는 이상, 위원을 대리하는 자가 대리 참석하여 의결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서면심의의 경우에도 대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같은 제도를 둔 취지에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경기도규칙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하여 의결하려는 경우에, 그 서면의결을 조례규칙심의회 위원인 실장·국장·본부장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심의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현행 규정에 대한 해석을 넘어 입법론적으로 볼 경우, 심의회에서 회의를 서면심으로 하는 경우에 그 서면심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회의에는 위원이 참석하여 의결하여야 한다는 위원회 운영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여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는 현행 경기도 규칙을 보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현행 거창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 제3조(구성)** ① 심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위원은 본청 담당관·국장·과장,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으로 구성한다.
- 제6조(회의)**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소집하되, 정례회의는 거창군의회 회의기를 감안하여 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심의할 의안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을 할 수 있다.
1. 재난·비상사태·행사 등으로 인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2. 안전의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6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